

[붙임]

국 외 출 장 보 고 서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2017년도 기본연구사업인 “주요 해외국 법집행기관의 금융거래추적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주요 해외국 법집행기관의 금융거래추적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영국에서 자금추적 및 범죄수익 환수 사무를 담당하는 국립범죄수사청(National Crime Agency; NCA)과 중대비리수사기소청(Serious Fraud Office; SFO)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추적과 관련한 각 기관의 역할, 권한, 실태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 실시

2. 출장기간

- 2017. 9. 10. - 2017. 9. 14. (3박5일)

3.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대상국가 : 영국 (런던)
- 방문기관 :
 - 중대비리수사기소청(SFO)
 - 국립범죄수사청(NCA) 금융정보분석원(UK FIU)

4. 출장자

- 강석구 선임연구위원 (사법개혁연구실장)

II. 출장 내용

1. 세부 일정

일자	주요 내용	비고
9월 10일(일)	인천 출발 / 런던 도착	- 한국 시각 10:35 - 현지 시각 14:30
9월 11일(월)	- 국립범죄수사청(NCA) 별관 방문 - 중대비리수사기소청(SFO) 방문	- SFO Kelly Johnson & Karen Hulme 면담
9월 12일(화)	- 국립범죄수사청(NCA) 본부 내 금융정보분석원(UKFIU) 방문 - 주영국 한국대사관 방문	- UKFIU Keith White 면담 - 주영국대사관 박현수 영사 면담
9월 13일(수)	런던 출발	현지 시각 12:35
9월 14일(목)	인천 도착	한국 시각 07:30

2. 세부 내용

가. 중대비리수사기소청(SFO: Serious Fraud Office)의 운영 실태 조사

□ 면담자 : ① Kelly Johnson (Acting Head of Policy & Engagement)

☎ +44 (0)207 239 7491 ✉ kelly.johnson@sfo.gsi.gov.uk

② Karen Hulme (Case Controller & Principal Divisional Investigator)

☎ +44 (0)207 239 7042 ✉ Karen.hulme@sfo.gsi.gov.uk

cf. Contact Point :

○ Levit Howord (External Relations)

✉ External.Relations@sfo.gsi.gov.uk

1) SFO의 조직 및 설립배경

- SFO는 심각하거나 복잡한 경제범죄(fraud), 뇌물(bribery) 및 부패(Corruption)의 최상위 수준을 관장하는 전문 기소 기관임
- SFO의 장(director)을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이 임명하지만, SFO는 정부나 법무부의 지시를 전혀 받지 않는 독립(indefendant) 기구라고 함
- SFO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에 심각하거나 복잡한 경제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수사관과 법률가가 처음부터 함께 관여하는 방식의 형사사법시스템으로서 Criminal Justice Act 1987에 근거하여 1988년에 설립
- SFO의 정원은 420명 내외이며, 연간 예산은 270만~300만 파운드 수준이지만, 범죄수익 환수기금을 포함하여 연간 600만 파운드 규모로 운영하고 있음

2) SFO의 권한

- SFO는 ① 내사(pre-investigation) 및 정부 수집(intelligence gathering), ② 수사(investigation) 및 기소(prosecution), ③ 공판(trial), ④ 범죄수익(proceeds of crime) 환수, ⑤ 국제협력(international assistance)에 이르는 강력한 권한 보유
- 이밖에도 SFO는 Criminal Justice Act 1987에 근거하여 “영장 없이도” 개인이나 은행 등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
- SFO는 임의수사뿐만 아니라 체포, 압수 등 강제수사도 할 수 있음

3) SFO와 NCA, 경찰의 관계

- 경찰은 경미범죄나 일반범죄, NCA는 마약, 자금세탁 등 중대범죄, SFO는 중대하고 복잡한 경제범죄나 뇌물범죄를 담당
- SFO가 담당하는 경제범죄나 뇌물범죄는 NCA도 담당하고 있지만, SFO는 이들 사건 중 매년 10건 정도만 청장이 SFO의 사건으로서 새로이 선정함으로써 연간 60건 내외의 사건만을 유지하여 처리하고 있음. 나머지 경제범죄나 뇌물범죄는 NCA가 담당
- NCA는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대범죄를 관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이나 외국과의 협력까지 맡고 있으므로 NCA에 FIU를 설치하고 있으며, 금융정보의 취급에 있어서만은 NCA에 우위(priority)를 인정하고 있음
- 참고로, NCA가 관리하는 금융정보는 FIU의 금융정보DB시스템인 “ELMER”에 저장되고, “ARENA” 및 “Money-web”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Anti-moneylaundering에 관여하는 모든 정부기구 사이에 공유됨. 이 점에 있어서는 SFO가 NCA의 하위에 있음

4) SFO의 운영실태

- 전체 사건의 50% 정도는 뇌물(bribery), 50% 정도는 경제범죄(fraud)나 자금세탁범죄(money-laundering)를 다루고 있음
- 뇌물사건은 영국내 회사나 영국과 관련된 회사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하며, 주고 받은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사 가능. 다만 수뢰자가 해외 소재 외국인인 경우는 수사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건 검사건 불문하고 뇌물 관련자는 예외 없이 수사 가능 (Bribery Act 2010에 근거)
- 금융거래 중 주식, 선물, 파생상품과 같은 주식시장과 관련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FCC(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서 관할하지만, 중대사건의 경우 SFO와 FCC가 서로 협력하여 관할 조정 가능
- 계좌 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거에 근거하여 실시하지만,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의 모든 계좌에 대해 전수조사함

나. 국립범죄수사청(NCA: National Crime Agency)의 운영 실태 조사

□ 면담자 : Keith White (Senior manager of UK FIU)

☎ +44 (0)20 7238 2869 ✉ keith.white@nca.x.gsi.gov.uk

cf. Contact Point :

① Simon Hall (Staff Officer to Deputy Director Nigel Kirby)

☎ +44 (0)207 238 3887 ✉ simon.hall@nca.x.gsi.gov.uk

② Angela Jolly (PA to Donald Toon, NCA Director)

☎ +44 (0)207 238 2799 ✉ angela.jolly@nca.x.gsi.gov.uk

1) NCA 및 UK FIU의 조직

- 경제범죄국(ECC: Economic Crime Command)의 정원은 NCA 전체 정원의 절반 규모인 4,200명 정도이며, 이 중 FIU는 60명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
- NCA에 경찰 부서도 있지만 NCA는 경찰조직이 아니며(즉, 국가경찰이 아님), 내무부장관이 청장을 임명하지만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는 독립기구라고 함

2) 금융거래 수사에 있어 NCA의 권한

- 금융거래 수사에 있어 영장이 필요한 경우가 예외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영장 없이 수사함(Money Laundering Regulation에 근거)

- UK FIU 분석 결과 범죄혐의가 발견된 사건은 수사기관(경찰, HRMC 등)으로 이첩하고, 수사를 이첩한 이후에는 FIU가 절차에 관여하지 않고 사후에 수사결과만 통보받음. 다만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한 수사에 난항을 보일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다시 FIU에 재조사를 요청하고, FIU의 재조사 후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하는 구조라고 함 (참고로, 금융조사에 있어서는 수사기관보다 FIU의 영향력이 크다고 함)

3) 금융거래 정보의 기관 간 공유

- NCA가 관리하는 금융정보는 UK FIU의 금융정보DB시스템인 “ELMER”에 저장되고, “ARENA” 및 “Money-web”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Anti-moneylaundering에 관여하는 모든 정부기구 사이에 공유
- 한국과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요약자료를 받아서 이를 공유하며, 작년의 경우 보고된 SARs 43만 건 중 1%만 FIU에서 분석하고, 나머지 99%는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2,500여 개 민간 office에서 분석함. 이러한 분석업무를 위해서는 End User Criteria(201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Financial Investigative Accreditation 자격이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함
- SARs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는 특별히 없으며, 공유 DB에는 280만건의 사건이 축적되어 보관되고 있고, 6년마다 DB refresh(갱신) 실시

다. 주영국 대사관 방문

□ 면담자 : 박현수 총경 (주영국대사관 영사/외사협력관)

☎ +44 (0)20 7227 5515 ✉ park0910@police.go.kr

○ 주요 논의사항

- NCA 및 자치경찰의 영국 내 위상 및 역할에 대한 정보 공유
- NCA 컨택 포인트 공유방안 협의
- 향후 영국 관련 KIC의 연구에 있어 상호 협력방안 논의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1. 관계기관 간 금융정보분석DB 공유시스템의 정착

- 영국은 ELMER(의심거래정보 DB), JARD(자금환수정보 DB) 등의 금융정보분석DB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러한 금융정보를 ARENA, Money-web 등의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관계기관 내에 공유하는 면이 매우 인상적이었음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서 가공한 금융정보분석DB 자체가 엄격한 요건 하에 심사분석실 내의 제한된 열람범위에서만 공유되며, 심사분석실 내에서조차 심사분석관 상호 간의 공유가 제한됨

2. 금융조사·분석에 있어 회계조사관 등의 적극 활용

- 영국 SFO의 주축 인력은 회계를 전공한 회계조사관이었으며, UK FIU의 수집한 의심거래 등의 금융정보를 분석하는 역할은 회계분석 자격을 가진 민간 회사였음. 더욱이 2,500여 개 회사에 분석업무를 위탁함으로써 60명 내외 정원의 FIU의 실제 운영은 10,000명 이상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함
- 반면, 우리나라 금융정보분석원의 경우 66명 정원 중 심사분석관이 45명이나, 전원 관계기관 파견공무원으로 구성됨으로써 금융위원회 파견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분석경력이 일천한 상황이었음. 또한, 전문화된 회계조사 상시인력이나 정보분석 민간위탁은 전혀 없었음

3. 실질적 금융조사권의 부여

- SFO는 영장 없이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함. NCA의 경우도 대개는 영장 없이 금융거래 자료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었고, 분석기관인 FIU를 수사기관인 NCA 산하에 둘에 따라 실질적인 금융조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경우 반드시 계좌번호를 적시한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여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의 경우 건강보험기록, 국민연금기록, 진료기록 등 행정자료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임